

수구 반대방향으로 쓰러진 벌도목에 맞아 부상

재해일자	2016년 1월 24일	재해현황	부상자 2명 (3개월 이상)
작업명	벌목	재해장소	벌목 현장

재해발생 개요



※ 기인물 (참나무, L=15m, R= 0.5m)

2016.01.24.(화) 오전 9시경 경북 문경시 소재의 임업 현장에서 재해자(2명)가 능선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참나무를 벌목하던 중, 벌도목이 수구 반대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작업자(2명)를 동시에 가격한 재해 발생

재해발생 원인



- 적절한 수구 만들기 미흡
- 대피로 및 대피장소 미지정
- 벌목작업 시 신호방법 미지정

재해예방 대책

- 벌목작업 시 위험방지 미흡
 -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4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뿌리부분 지름(근경)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 벌목 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
- 벌목작업 시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지정
 -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벌목작업 직후 근로자가 대피하도록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설정해야 함
- 벌목작업 시 신호방법 지정
 -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,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대피 장소·방향 설정 후 작업하도록 교육하여야 함